고흥군의회 공고 제2026－3호

「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,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고흥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.

2026년 2월 26일

고 흥 군 의 회 의 장

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이유

○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 시기를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여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정 운영을 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○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단서 신설(안 제3조제2항제1호)

1.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. 다만,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·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.

3. 개정조례안: 붙임

4. 조례안 예고기간: 2026. 2. 26. ~ 3. 3.【5일간】

5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흥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1)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3) 기타 참고사항 등

나. 의견 제출방법: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도 가능

다. 의견 제출받는 곳

1) 우편 : (59542)/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
고흥군의회의장 (참조: 의회사무과장)

2) 전화: 061-830-5032, 팩스: 061-830-5595

붙임 1.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2.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1부. 끝.

[붙임 1]

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·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정례회의 회기운영) ① (생략)	제3조(정례회의 회기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정례회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그날이 토요일·공휴일인 때에는 그다음 날에 집회한다.	② ----------. 다만, ----------.
1.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. <단서 신설>	1. ----------. 다만,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·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.
2.·3. (생 략)	2.·3. (현행과 같음)

[붙임 2]

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: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: (서명 또는 날인)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:

자치법규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견	비 고
	찬성	반대		